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6월 29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7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7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7년 7월 16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보건관리과장 종석목)

□ 제안이유

-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 건강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건강도시 부천을 만들어 나가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기본사업을 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체에 대하여 건강도시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시민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주간 및 건강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부천시장기발전계획에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부천시 건강도시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건강도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언론기관, 시민 및 공동체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8조제1항)
-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와 연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제정안 제14조의 위원회의 대행 운영 규정은 제12조의 위원회 구성 조항과 상치되는 것 아닌가?</p>	<p>○ 위원회를 통·폐합(축소)하는 흐름에 있어 부천시건강생활실천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미임.</p>
<p>○ 건강도시사업이 시정 각 분야를 포괄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도시자문위원회 대행조항은 부적합하다고 보는데?</p>	<p>○ 그렇게 생각함.</p>
<p>○ 안 제16조와 제17조는 언론기관과 시민들의 역할을 강제하는 조항인데 조례로 가능하다고 보는가?</p>	<p>○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함께 참여하자는 포괄적 의미를 규정하고 있음.</p>
<p>○ 건강도시 개념이 시정 각 분야의 협조와 참여없이 추진이 어렵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의지를 갖고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p>	<p>○ 앞으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음.</p>
<p>○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제4조 4호와 제12조 제3항중 2호를 수정해도 되는가?</p>	<p>○ 가능함.</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건강도시자문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30%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함.
- 제4장 지역사회 역할 규정은 선언적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제2장 제3조 기본이념에 포함되어야 함.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5
의결 연월일	2007. 7. 19

제안년월일 : 2007년 7월 13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건강도시사업이 시정 각 분야에 영향이 미치는 포괄적인 성격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과 지역사회 역할에 관한 규정중 언론기관의 역할을 강제하는 의미를 담은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조례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건강도시 기본사업의 범위중 조례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생활 영역별 시범사업 추진”을 “생활의 장내 시범사업 추진”으로 수정함.(안 제4조 제4항)
-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시의원 위촉자격을 “부천시의회의회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으로 수정함.(안 제12조 제3항 제2호)
- 건강도시사업이 시정 각 분야에 영향이 미치는 포괄적인 성격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 (안 제14조)
- 지역사회 역할중 언론기관의 역할에 관한 규정이 다소 강제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이를 삭제함.(안 제16조)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4항중 “생활영역별 시범사업 추진”을 “생활의 장내 시범사업 추진”으로 수정함.

안 안 제12조 제3항 제2호의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시의원 각 1 명”을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으로 수정함.

안 제14조를 삭제함.

안 제15조를 제14조로 수정함.

안 제16조를 삭제함.

안 제17조를 제15조로 수정함.

안 제18조를 제16조로 수정함.

안 제19조를 제17조로 수정함.

안 제20조를 제18조로 수정함.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조례안과 동일함.』

신·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기본사업) ----- 1~3. (생략) 4. “ <u>생활역영별</u> ” -----	제4조(기본사업) ----- 1~3. (조례안과 같음) 4. “ <u>생활의 장내</u> ”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 1. (생략) 2. <u>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시의원 각 1명</u> 3~5. (생략) ④~⑥ (생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조례안과 같음) ③ ----- 1. (조례안과 같음) 2. <u>부천시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u> 3~5. (조례안과 같음) ④~⑥ (조례안과 같음)
제14조(위원회의 대행운영) (생략)	<삭제>
제15조 -----	제14조 -----
제16조(언론기관의 역할) (생략)	<삭제>
제17조 -----	제15조 -----
제18조 -----	제16조 -----
제19조 -----	제17조 -----
제20조 -----	제18조 -----

[수정안 포함]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증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함으로써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요인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개발하고, 시민 모두가 상호 협력하여 개인의 건강증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의 장”이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춘 공동체로서,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제2장 기본이념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이념) ① 시장은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한 양질의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가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 모두가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및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 모두가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사업) 시장이 추진하는 건강도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지역건강도시연맹”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을 통한 국내·외 정보교류망 구축 사업
2. “세계보건기구건강개발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건강도시체계 구축 사업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역사회 참여강화 사업
4. 생활의 장내 시범사업 추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사업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도시 간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5. 각 부문별·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의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 정책에 건강도시 개념의 도입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민 및 공동체의 건강증진활동 여건조성과 권장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유산 보존 및 건강도시 비전 개발에 관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부천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건강주간의 운영) 시장은 매년 건강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월 전에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건강지역의 설정)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

민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지역을 금연 또는 금주 지역으로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장기발전계획의 반영)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을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4.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원미구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시의 각 국장 및 소사구·오정구 보건소장

2. 부천시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
3. 부천교육청 및 부천남·중부경찰서 관계자 각 1명
4. 건강도시 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및 전문가
5. 건강도시 정책과 관련된 단체의 장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도시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역사회역의 역할

제15조(시민 등의 역할) ① 시민과 공동체는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사업추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건강도시사업의 주체

및 객체로서의 역할에 힘써야 한다.

②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스스로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동체는 고유활동 전개과정에 건강도시사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 시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와 연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